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7

제출년월일 : 2000. 11.

제출자 : 영주시장

### 1. 개정이유

현행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 용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기금의 읍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를 세분하여 명문화 함(안 제5조)
- 다. 기금의 읍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 마.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관련법령(발췌) 1부.

## 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영주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영주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2.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시판 및 안전시설 설치

3.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4.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5.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6. 기타 시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용자)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용자하는 경우 용자의 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용자금의 용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이율은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용자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때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주택과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타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이 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영주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조(기금의 조성) .....	..... 1. .... 2. .... 3. ....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lt;신설&gt;</u>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영주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② .....	.....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p>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시안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u>&lt;신설&gt;</u></p>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li> <li>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시판 및 안전 시설 설치</li> <li>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li> <li>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li> <li>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li> <li>기타 시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6조(기금의 융자)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경우 융자의 한도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하며 이율은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때</li> <li>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li> <li>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li> <li>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li> </ol>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6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u>&lt;신설&gt;</u>	제7조(회계공무원) ① ..... ..... ② ..... .....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①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u>&lt;신설&gt;</u>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주택과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조 례 (안)
<u>〈신 설〉</u>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운용계획안</li> <li>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li> <li>3. 기타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li> </ol>
<u>〈신 설〉</u>	<p>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p> <p>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제8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 ..... 80일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li> <li>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li> </ol> <p>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u>〈신 설〉</u>	제13조(시행규칙)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관련 법령(발췌)

### 【재난관리법】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등) ①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외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5.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협이 높은 때에 인명 구조·부상자 치료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6.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제5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 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고, 그외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의 안 검 토 보 고 서

###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47호
- 의 안 명 :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과

### 2. 제안이유

현행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 용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기금의 응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 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를 세분하여 명문화 함 (안 제5조)
- 다. 기금의 응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라.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1조)
- 마.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

###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조성되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기금의 응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1조)을 신설하고,
- 개정된 지방재정법('99. 8. 30)에 부합되도록 결산 및 보고사항(안 제12조)을 정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200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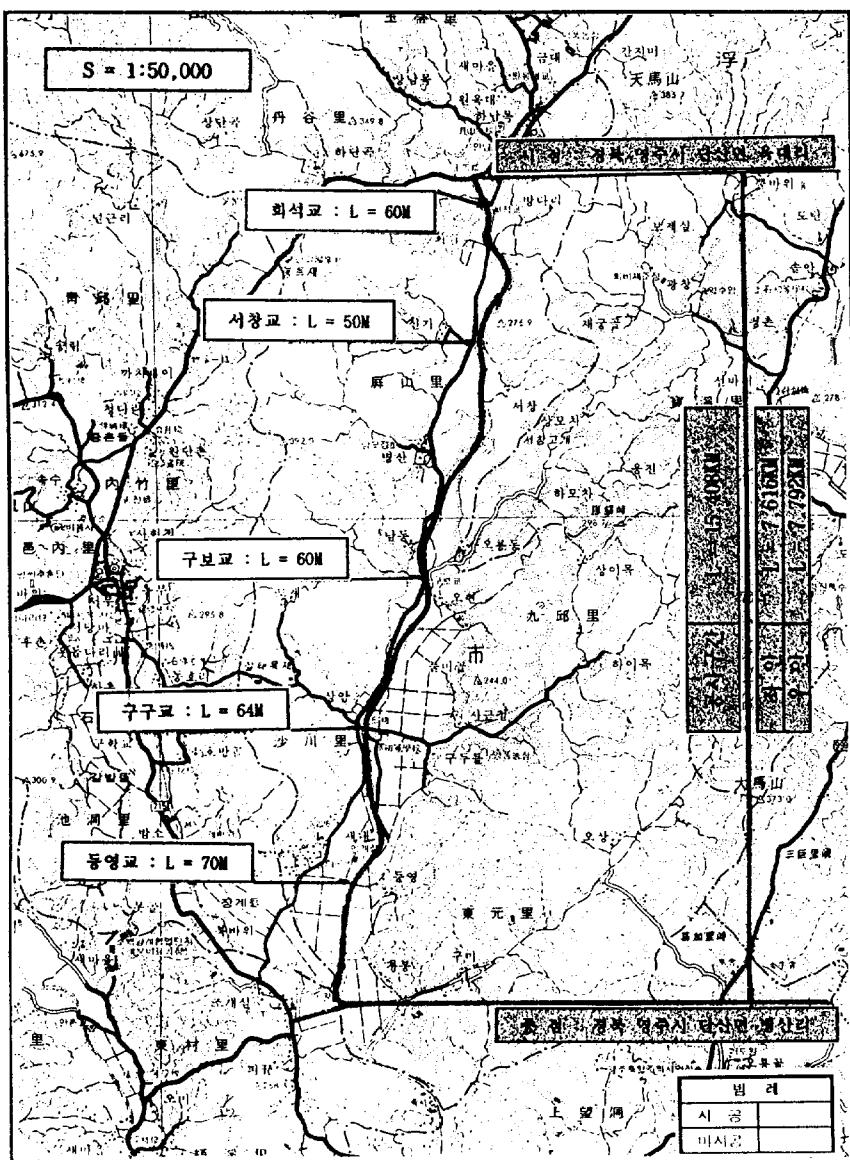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

# 現況

2000. 11.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 사천제 하천개수4차공사

## 1. 위치도



## 2. 사업 개요

◎ 하천명 : 사천(준용하천)

◎ 위치 : 경북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동원리

◎ 공사 목적 : 본 공사는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상류부 지점의 지류인  
사천하구로부터 상류부 옥대교까지의 하천개수공사로서, 미 개수된 협소한  
하폭을 개수하여 수해로부터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코자함.

◎ 공사 기간 : 전 체 ~ 1997. 7. 12 ~ 2002. 8. 12 (61개월)

금회(4차) - 2000. 2. 11 ~ 2000. 12. 31

◎ 시행청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시공자 : 보성건설㈜ (90%), 대진종합건설㈜ (10%)

◎ 연차별 추진현황

구 分		단 위	전체계획	기시행	금 회	장 래
사 업 비	계	백만원	22,136	6,552	4,777	10,807
	도급액	"	19,133	6,255	4,000	8,878
	관급비	"	116	-	-	116
	용지비	"	2,887	297	777	1,813
사 업 양	축제	M	15,717	6,302	3,201	6,214
	호안	M	15,829	5,437	3,317	7,075
	취수보	개소	22	9	4	9
	배수통문	개소	12	5	1	6
	배수통관	개소	32	16	9	7
	포장	a	37.33	5.40	4.14	27.79
	교량	M/개소	304/5개소	110/2 서창교하부공원료, 회식교하부공원료, 구보교교각3개소	60/2 (회식교상부공) (구보교교대)	134/3개소

## 3. 공사현황(금회)

구분	계획	실적	대비
전체	52	53	102
금회	94	95	101

(2000. 11. 현재)

공종	단위	금회(4차) 시공			
		보활	설계량	시공량	잔량
계		100%	4,000,000,000	3,799,997,000	200,003,000
가. 축재공		12%	464,773,000	441,534,000	23,239,000
성토	m <sup>3</sup>		62,330	60,000	2,330
줄매	m <sup>3</sup>		20,760	15,000	5,760
나. 호안공		27%	1,094,609,000	1,039,878,000	54,731,000
호안블럭	m <sup>3</sup>		9,311	7,500	1,811
돌망태	m <sup>3</sup>		11,382	9,000	2,382
다. 구조물공		40%	1,595,359,000	1,515,590,000	79,769,000
배수통관	M/개소		9	8	1
배수통문	M/개소		1	1.0	-
취수보	M/개소		4	4	-
교량공	M/개소		2	2	-
라. 사급자재비		17%	674,943,000	641,195,000	33,748,000
마. 부대공		4%	170,316,000	161,800,000	8,516,000